

오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

제정	2008년	1월	15일	조례 제	954호
개정	2010년	4월	22일	조례 제	1093호
				(제명개정 포함)	
개정	2010년	9월	20일	조례 제	1108호
				(행정기구 설치조례)	
일부개정	2011년	2월	21일	조례 제	1140호
일부개정	2011년	12월	14일	조례 제	1175호
				(행정기구 설치조례)	
일부개정	2013년	3월	20일	조례 제	1275호
				(행정기구 설치조례)	
일부개정	2014년	4월	2일	조례 제	1349호
				(행정기구 설치조례)	
일부개정	2015년	6월	1일	조례 제	1399호
				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	
일부개정	2017년	4월	3일	조례 제	1563호
				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	
일부개정	2017년	9월	26일	조례 제	1603호
일부개정	2018년	12월	26일	조례 제	1693호
				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	
일부개정	2019년	9월	30일	조례 제	1739호
				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	
전부개정	2021년	5월	17일	조례 제	1909호
				(제명개정)	
일부개정	2021년	9월	24일	조례 제	1944호
일부개정	2024년	5월	17일	조례 제	2168호
				(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정에 따른 문화재 명칭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)	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로명주소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1. 9. 24>

제2조(주소정보의 사용 확대)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. <개정 2024. 5. 17>

1. 도로명 : 모든 도로의 명칭
2. 도로명과 기초번호 : 「도로명주소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

오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

3. 도로명주소 :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
4.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: 법 제22조제6항 외에 시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·변경의 기초단위
5. 국가지점번호 :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것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
6. 사물주소 :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

제3조(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등) ① 시장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24조제6항 및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오산시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9. 24>

1.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
 2.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
- ② 시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.

제4조(광고의 비용)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광고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 9. 24>

1. 무료
 - 가.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
 - 나.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
 - 다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2. 유료: 영 제45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유료 광고비용에 준하는 금액

제5조(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) 시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

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관 등의 시설의 설치
2.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(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),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에 설치
· 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
3. 관내 산하기관,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
4. 시·행정동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·보급
5.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29조에 따른 오산시주소정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주소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위원장을 제외한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
1. 소방, 경찰 및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
2.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
3. 시의 특성과 역사,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7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사망,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위원이 품위손상,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

판단되는 때
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,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위원회의 회의록 작성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1. 회의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
3. 토의 및 진행사항
4. 위원·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1조(위원회의 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주소정보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. <개정 2021. 9. 24>

제12조(손해배상공제 가입)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3조(주소정보의 홍보·교육) ① 시장은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민방위·예비군 교육, 각종 단체의 회의·행사·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4조(위탁) ①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9. 24>

1.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
2.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·재교부에 관한 사항
3.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
4.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·배포
5.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
6.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
7.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8.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
9.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10.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

② 시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·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주소정보시설의 종류, 수량, 위치
2. 계약기간 및 금액
3.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
4. 주소정보시설의 일체조사 계획
5. 주소정보시설의 훼손·망실에 따른 조치계획
6.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

오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
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5조 삭제 <2021. 9. 24>

부칙 <2021. 5. 17 조례 제1909호 전부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한 오산시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한 행위로 본다.

제3조(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설치된 오산시도로명주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오산시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위촉된 오산시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오산시주소정보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.

부칙 <2021. 9. 24 조례 제194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4. 5. 17 조례 제2168호,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정에 따른 문화재 명칭
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>

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 및 [별지 제2호서식] 삭제 <2021. 9. 24>